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8. 18.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라. 피해발생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금 결정통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사. 대장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8. ~ 8. 25.(7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 례 안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양군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관내에서 농어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6. “수산양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7.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9.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되는 농어업재해로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산물을 양식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방치하거나 영농을 하지 않는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5. 무허가 축사 시설 및 축산업 신고·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6. 무허가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및 내수면어업 신고·허가(경영체 등록)를 하지 않은 농가
7.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

어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의 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군수는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어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지수별 복구 지원금 기준표(제7조제1항 관련)

재 난 지 수	복구지원금(원)
200 이상 ~ 300 미만	300,000
100 이상 ~ 200 미만	200,000
50 이상 ~ 100 미만	100,000